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5- 46호

「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5년 8월 22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인



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8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19.

발 의 자 : 김 강 산 의원

1. 개정이유

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중단(2024. 7. 1.자)과 정부 아동치과 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으로 사업 방향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시행하는 아동에 대한 치과치료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」
⇒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」

나.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규정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
다. 시행계획의 수립, 예산지원,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 ~ 제5조까지)

라. 치과치료 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, 치료지원비 신청에 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 및 안 제7조)

마. 지역협의체의 구성·운영, 지역협의체의 기능에 대한 규정(안 제8조 및 제9조)

바. 지역협의체의 수당 등,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(안 제10조 및 안 제11조)

사.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,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(안 제12조 및 안 제13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
2025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

(참조: 의회사무국장, 전화: 02-450-2843, FAX: 02-454-0438,

E-mail: kimda51@gwangjin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